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71
----------	-----

2023년 6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05월 30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3년 06월 01일
3. 상정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06월 19일 상정·검토보고·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1. 제안이유

- 재난, 경기 침체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및 복지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선별 발굴·집중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임.
-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실현코자 기존 동주민센터의 복합 기능을 복지·건강분야 중심 사업으로 재편함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유사 타 조례인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 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조항 신설(부칙 제2조)
- 나. 기본원칙, 사업 범위 등 조례 각 조항에서 복지·건강 분야 외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행정, 여성 분야 관련 문구 및 조항을 삭제(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12조)
- 다. 사업 수행 시 수행 주체로 시 이외 자치구의 자율성과 책무를 강화하는 취지로 조항에 자치구 문구 삽입(안 제4조, 제11조)
- 라.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활동 시 통·반장 등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복지·건강 분야 사업 수행인력의 안전사고 발생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9조, 제11조,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사회보장 전달체계)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검토의견: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3. 4. 13. ~ 5. 3.) 결과: 불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

- 동 개정조례안은 2015년부터 추진되어 온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사업 재정비의 일환으로, 기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해‘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사업을 복지·건강 분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되었음.

2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개정안의 배경 및 필요성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은 민선6기 ‘洞 마을복지센터’라는 사업명으로 논의되기 시작됨. 사업은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15년 7월 서울시 13개구 80개동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주요 추진경과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기(민선 6기) 단계별 사업 시행 : '15년 7월~
 - 복지·건강상담, 마을활력소 조성, 주민자치 등 현장 지향의 공공서비스 제공
 - 1단계 80개동('15.7월), 2단계 283개동('16.7월), 3단계 342개동('17.7월), 4단계 408개동('18.5월)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기(민선 7기) 계획수립 및 추진 : '18.12월~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19.5월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제정 :19.5월
- 찾동 총괄 업무 이관
 - 행정국→ 약자와의동행추진단 : '22.8월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복지정책실 : '22.10월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단순 민원·행정 처리에서 주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및 마을공동체 조성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의 책임과 주민 중심주의를 더욱 강화하고자 했으며, 행정체계를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환하여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주민의 필요에 부합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음.¹⁾
- 본 사업으로 인해 2015년부터 총 3,309명의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돌봄매니저 등 동 주민센터 직원이 증원되었으며, 동별 평균 7.8명이 증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업 시행 이후 동 평균 복지사각지대 발굴건수가 사업 시행 후 3년간 매년 약 33%씩 증가한 것²⁾으로 나타나고, 동 별 평균 복지상담실적이 최근 3년 평균 월 488건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였음.
- 특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의 주된 목표 중 하나는 가정보편방문이었으나, 주민들이 가정방문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

1) 김귀영 외(2018).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 사업 성과관리 학술용역」. 서울연구원.

2) 김귀영 외(2018).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 사업 성과관리 학술용역」. 서울연구원.

으로 나타났고,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도 보편방문 실적 등으로 인해 업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해 모든 대상자에 대한 ‘가정방문’에 너무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는 사업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2018년부터 제기되어 옴.³⁾
- 또한 주민자치, 마을생태계 분야 사업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 설계라는 지적이 있었음.
- 집행기관에서는 그간 있어 온 사업의 문제점 등을 반영해 개선하고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복지·건강분야 기능 중심’으로 사업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고 있으며, 본 전부개정조례 안에는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나. 개정안의 세부내용

1) 조례 제명 변경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보편방문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 사업의 목표가 담겨있는 사업명으로, 본 조례전부개정안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보편방문보다 복지취약계층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라는 사업명을 차용하기보다 새로운 사업명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3) 김귀영 외(2018).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 사업 성과관리 학술용역」. 서울연구원.

- 이에 본 조례전부개정안에서는 민선8기 시정 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과 시정핵심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 에 맞춰 ‘동행센터’ 로 변경하였고, 이를 제명에 반영하였음.

2) 조례 목적 및 정의 등 관련(안 제1조~제3조)

- 개정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가 동 단위의 지역 사회보장 증진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행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기존 조례에서 목적으로 명시된 공동체 회복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 부분이 삭제된 것임.
- 개정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쓰이는 주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사업의 기본 원칙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다.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안 제5조, 제6조)

- 개정안 제5조에서는 ‘동행센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및 지역사회보장 기능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기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에서는 4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존 사업의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복지, 건강 분야 뿐 아니라 마을공동체, 여성, 주민자치 분야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어 각 실국의 사업이 상호 충돌되거나, 사업실행에 명확한 주체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면, 금번 개정을 계기로 복지·건강 분야를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주체가 명확화되고 효율적인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라. 자문회의(안 제 7조)

- 개정안에서는 기존 운영위원회 조문을 ‘자문회의로’ 변경하면서 심의내용, 위원구성, 위원 임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부분이 삭제됨
 - 추후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시 구체적인 운영계획 안을 마련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마. 사업의 범위 (안 제8조)

- 개정안 제8조에서는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음. 기존 조례에서는 사업의 범위를 ‘복지, 건강, 여성, 마을, 자치, 행정 등’을 포괄하여 명시하고 있었으나, 본 개정안에서는 통합적 복지서비스와 보건·복지서비스 및 직접방문과 종합상담실시 사업으로 사업의 범위를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보편방문을 위기가구 집중방문 체계로 개편하고, 취약계층을 선별해 집중방문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1차적 방문건강관리는 동주민센터 방문 간호사 중심으로, 다학제적 통합관리는 보건(지)소 중심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임.
- 기존 조례에서 사업의 범위는 ‘어르신 가정, 출산가정, 양육수당 수급가정 및 빈곤위기, 학대·폭력 등 위기가정과 지역사회, 통합사례관리, 복지공동체 지원’ 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아래의 표와 복지분야와 사업분야의 사업방향을 모두 변경하여 사업 대상과 사업내용을 모두 변경하고자 함

<표> 동행센터 사업 복지분야 사업방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방문 대상	65세 도래 어르신 보편방문	종 료 (※ 65세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적극 복지 안내)
	출산·양육가정 보편방문	종 료
	빈곤·돌봄위기가구 방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질적인 방문 강화(상담횟수, 내용 등) 신규 발굴 및 방문 (※ 복지사각지대 발굴, 1인가구 실태조사, 복지멤버십 가입안내 등)

<표> 동행센터 사업 건강분야 사업 방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방문 대상	65세, 70세 도래 어르신 보편방문	종 료	
	건강취약계층 방문 (※ 만65세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차)	동 방문간호사 건강 평가 실시
		(2차)	복합만성질환대상 계속 관리대상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에서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분야는 기종료되었으며, 동주민센터의 역량을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에 집중한다는 관점에서 본 조문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됨.
- 또한 본 조문에서는 기존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던 돌봄 SOS센터 사업, 위기가정통합센터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안 제8조(사업의 범위) ① 동행센터는 지역주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의 사회보장증진 등을 목표로 하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등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돌봄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보건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돌봄SOS사업
3. 동행센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대상자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상담 등 실시하는 사업

② 동행센터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사회적 고립·빈곤·소외·위기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 유관부서, 자치구 및 복지관련 기관,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밀접한 유대관계가 형성된 지역주민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발굴, 안부 확인 및 모니터링 활동

2. 지역 내 복지자원 및 서비스 연계를 활용한 유기적 민관협력 지원활동

- ③ 시장은 학대·폭력 등 위기가정을 돕기 위해 구청장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위기가정통합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자치구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 등 배치에 관하여 소관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마. 포상금 지급 (안 제13조)

- 안 제13조에서는 지역 주민등의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참여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 강동구, 강남구, 용산구에서는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위기가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에서는 포상의 대상을 기관, 단체 등으로 포괄하여 명시하고, 상장과 상패 수요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표> 서울시 자치구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금 관련 현황

연번	자치구	근거조례	제정	지급기준	포상금
1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3.17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1건당 10만원 상당의 현금 등으로 지급하되 동일 신고인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연번	자치구	근거조례	제정	지급기준	포상금
2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2021.4.28	신고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1건당 3만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3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2023.3.29	신고된 가구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함
4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2023.4.27	구청장은 신고된 가구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구청장이 별도로 정함

연번	자치구	근거조례	제정	지급기준	포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5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1.8	<p>① 구청장은 신고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p> <p>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p> <p>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p>	1건당 3만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6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2021.4.15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
7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4.28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 지역복지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
8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9.16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9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	2023.4.7.	<p>①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해 신고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p> <p>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p>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서울시 외에도 충청북도 충청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중구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포상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위기가구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본 조례안에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급 근거를 포괄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에 근거해 포상금을 지급할 시에는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입법예고 기간('23.4.13~5.3.) 동안에도 이와 관련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발굴·협력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자발성을 가져야한다는 사유로 포상금 지급 조항에 대한 삭제 요구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

3 종합의견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의 추진방향 등의 개편과 함께 근거가 되는 조례를 개정해 정책추진의 일관성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음.
- 동 전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집행기관에서는 「서울시 동행센터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따르면 복지·건강 중심 돌봄센터로 거듭나 촘촘한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통합복지를 실현하는 동시에 현장중심의 복지전달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기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집행기관 여러 실·국에서 운영되면서 추진주체의 불명확성, 조직관리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금번 개정을 통해 복지·건강분야로 사업 내용을 집중시키고, 복지정책실이 사업을 총괄하게 되면서 추진주체가 명확해지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됨.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편방문의 어려움, 취약계층 집중 지원 등의 필요성 등이 현장 자치구 등 사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금번 사업방향 개편과 조례 개정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71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재난, 경기 침체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및 복지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선별 발굴·집중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임.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실현코자 기존 동주민센터의 복합 기능을 복지·건강분야 중심 사업으로 재편함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유사 타 조례인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조항 신설(부칙 제2조)

나. 기본원칙, 사업 범위 등 조례 각 조항에서 복지·건강 분야 외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행정, 여성 분야 관련 문구 및 조항을 삭제(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12조)

다. 사업 수행 시 수행 주체로 시 이외 자치구의 자율성과 책무를 강화하는 취지로 조항에 자치구 문구 삽입(안 제4조, 제11조)

라.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활동 시 통·반장 등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복지·건강 분야 사업 수행인력의 안전사고 발생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9조, 제11조,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사회보장 전달체계)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3. 4. 13. ~ 5. 3.) 결과: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작성자 :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 허선미(☎2133-7380)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 단위의 지역 사회보장 증진 등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동행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행센터"란 동 단위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의 복지·건강 향상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수행하는 활동 체계를 말한다.
2. "지역의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장을 동 단위 지역사회 중심으로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주민"이란 동 단위 행정구역에서 거주·생활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4. "지역"이란 동 단위 행정구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동행센터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내부의 부서 간에 협력하고 민과 관이 연계하는 통합적 운영체계를 지향한다.

② 동행센터는 인권에 기반한 직무태도를 견지하며, 지역중심·수요자중심의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③ 동행센터는 지역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공공의 책임을 최우선으로 하며 그에 필요한 인력·물적 자원 확보 등 공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동행센터 사업을 개발하고 지역에 적용하여 지역 주민복지의 향상과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및 지원
2.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3. 시·구·동 간 또는 민·관 간 긴밀한 소통협력을 위한 논의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4. 그 외 동행센터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과 구청장은 동행센터의 지역사회 보장 기능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이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2. 지역사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 발굴 및 지원
3. 지역사회 주민에게 가장 적합한 복지서비스 지원
4. 지역사회 주민 중심의 상시 이웃돌봄 안전망 구축

제5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동행센터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동행센터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 단위로 수립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2. 운영 및 지원체계
3. 주요 성과기준 및 연차별 목표
4. 자원의 확보 및 배분

5. 그 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동행센터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 제출 및 보고)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의 실행계획을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연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시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회의) ① 시장은 동행센터 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서울특별시 동행센터 관련(복지, 건강)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③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범위) ① 동행센터는 지역주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의 사회보장증진 등을 목표로 하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등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돌봄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보건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돌봄SOS사업

3. 동행센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대상자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상담 등을 실시하는 사업

② 동행센터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사회적 고립·빈곤·소외·위기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 유관부서, 자치구 및 복지관련 기관,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밀접한 유대관계가 형성된 지역주민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발굴, 안부 확인 및 모니터링 활동

2. 지역 내 복지자원 및 서비스 연계를 활용한 유기적 민관협력 지원활동

③ 시장은 학대·폭력 등 위기가정을 돕기 위해 구청장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위기가정통합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치구 통합 사례관리사, 상담원,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 등 배치에 관하여 소관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9조(통장 및 반장 참여) 시장은 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자치구의 통장 및 반장(이하 “통반장”이라 한다)과 지역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발굴하여 동주민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역량강화) ① 시장은 동행센터 업무 수행인력의 역량강화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지정하여 관련 공무원이 매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청장이 동행센터 사업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행센터와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청장이 동행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방문인력 안전확보) ① 동행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2. 방문간호사

3. 통합사례관리사

4. 그 밖에 시장 및 구청장이 동행센터 업무 수행인력으로 인정하는 자

② 시장과 구청장은 제1항의 방문인력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행센터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등 지급
2. 방문인력에게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
3. 그 밖에 시장과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지원사항은 시장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자치구 통반장과 지역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동행센터 사업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역할을 부여할 경우,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과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동행센터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지역사회 주민 등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여 신고하거나 그 발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제5조제2항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p>구로구 오류제1동 (한서정)</p>	<p>○ 제13조(포상금 지급) 조항 삭제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발굴·협력 활동은 지역사회 안에서 자발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포상금 지급이 목적이 되는 것은 부적절 - 이미 각 동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위원을 두고 있고, 위원들은 지사협, 복지통장, 우리동네돌봄단 및 직능단체의 임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활동 수당을 지급받는 분들이 다수임 - 이웃발굴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민센터와 지역주민이 순수하게 협력하는 관계에 부정적 영향 초래 우려 	<p>○ 미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조항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언적 조항임 - 동 조항은 임의규정으로, 포상금 지급 시행 여부, 신고대상, 지급 및 제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와 협력하여 사전 의견수렴 및 다각적 검토를 통해 자발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화할 예정임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안의 내용은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안심돌봄복지과 허선미 (02-2133-7380)